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제조 · 건설 ·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 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 ·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협력업체 선정 · 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 · 운용 실천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회사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1)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이 때, 아래 항목을 평가 배점으로 산정하되 각 SG의 실정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한다.

- 경영관리(500점) : 윤리경영, 고객만족도 관리, 생산관리 등
- 품질관리(500점) : 공정품질, 공정관리, 자재 및 설비 관리 등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1) 협력업체로 선정 ·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1)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1)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부도, 폐업, 면허취소 또는 파산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유발 업체
-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거래유지가 부적절한 업체
- 중대품질문제를 야기하여 회사의 유 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유사 동종업체를 선동하여 담합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어음, 수표 등이 거래정지 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 개시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 거래품목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법규위반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분쟁사례 등 하도급질서의 위반 또는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3. 실천사항의 도입 · 운용여부 판단기준

회사의 실천사항 도입 · 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 운용한 것으로 본다.

가. 실천사항 내용을 협력업체 등록 · 운용 관련기준(사규, 업무지침 등)에 반영 하였을 것
나. 협력업체 등록 · 운용 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 하였을 것
다.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시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하였을 것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부 칙

1. 이 실천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실천사항은 2019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실천사항은 202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